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3일 14시 49분

필름식 번호판(8자리)시행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제작수수료 조정

2020.06.29 조회수 2050 등록자 이기훈

○ 2019. 9. 1. 부터 기존 7자리 자가용 승용자동차(대여사업포함) 등록번호 체계가 포함되어 8자리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

○ 7월 1일 부터는 필름식 번호판 제작에 따른 승용차량(8자리만 해당)에만 부착이 가능하며 기존 차량은 번호판 교체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합니다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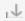
○ 또한 번호판 제작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

-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계(270-8241)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.

2020년 6월 25일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 필름식 번호판 제작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제작수수료 조정.hwp (871 hit/ 1.28 MB) 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른 시설물 휴관...

다음글
도내 자동차종합검사 가능업체 현황안내

MokPo - Si
Web Contents

